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98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장동혁 · 김예지 · 박덕흠

박준태 • 주진우 • 박상웅

정희용 • 이달희 • 김장겸

서범수・강승규・최보윤

인요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경우에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인구소멸 지역 내산업단지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방법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국가재정법」에 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정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에 관한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 지정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 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 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국가재정법」에 대 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주거・교통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요건
<신 설>	망법 및 실사 등에 완안 요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의 대자와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 구역 또는 구획 등 지정에 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신 설>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일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투화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